

터키의 외국인투자법 개관

- 외국인 투자 관련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

김 종 일

(아세아연합신학대 중동연구원 교수)

[특집]

2012년도 제1호는 교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협력 강화 대상으로 주목되고 있는 신흥시장국 MIKT(Mexico, Indonesia, Korea, Turkey)에 대한 투자관련 법제정보로 구성합니다.

I. 들어가는 말

II. 터키의 투자관련 현황

1. 터키 개요
2. 투자 현황

III. 외국인투자법의 목적과 범위

IV. 기본개념

1. 외국인 투자자
2. 외국인 투자

V. 터키의 외국인투자법상 기본원칙

1. 투자의 자유원칙
2. 국내 투자자와의 평등원칙
3. 공유화와 국유화원칙
4. 자본의 이동 자유원칙
5. 부동산 취득의 원칙
6. 분쟁에 대한 해결점 모색과 방어에 대한 원칙
7. 현금 외에 자본의 가치에 대한 조정원칙
8. 외국인 직원 고용원칙
9. 연락사무소 개설원칙

VI. 맺는 말

I. 들어가는 말

일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빈곤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제에서는 재정과 지불 균형의 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국으로부터의 기부, 차관, 투자 등의 자본 유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외국으로부터 기부나 차관을 유치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후에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또한 외국의 차관 유치가 제대로 유용될지의 여부도 사실상 불확실할 뿐 아니라, 차관의 원금 상환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것 또한 보통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며 이는 결국 국가 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남아 있게 된다. 그러므로 개발도상국가인 터키로서도 이러한 자본의 필요를 외국인 투자로부터 그 해결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자본의 유치는 매우 다방면으로 유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국가 주도의 새로운 투자가 가능해지고, 국가의 새로운 기술을 축적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고용창출의 기회를 가져 오게도 한다. 게다가 이러한 외국자본의 활용은 특정 제품들의 자국 내 생산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도 높여줄 수 있다. 이러한 자국 내에서의 변화는 결국 자국 산업의 발전, 수출의 호조, 외환 유통 흐름의 활성화, 강력한 자본 시장의 형성 등 경제의 순 기능 구도를 가능하게 해 준다.

일반적으로 자본을 가지고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 국가의 국내 시장에 진출해서 시장 장악을 통해 궁극적인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그 국가의 유력한 원자재 확보를 통해서 국제 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하기도 한다. 외국 투자자들이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기 전에 먼저 그 나라의 투자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정치, 경제의 안정성 여부, 조세 및 무역정책, 그 나라의 외국인 투자와 민간자원 유치에 대한 긍정성 여부, 국가의 투자 장려정책, 기간산업의 건설함 정도, 이윤과 자본의 원활하고도 손쉬운 유통 및 신뢰성 여부, 저렴한 노동력, 시장의 크기, 자유 국제무역정책, 업무 및 행정 진행의 속도와 수월성 여부, 외국자본에 대한 법적 안전성, 분쟁 발생 시 이에 대한 국제법 효력의 정도 여부 같은 사항들이다.

터키공화국(이하 터키)은 현재 외국 자본의 유치를 위해 1954년 1월 18일에 승인된 법률 제6,224호 ‘외국자본장려법(Yabancı Sermayeyi Teşvik Kanunu)’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시대적 환경으로 인해서 자유경제질서 안에서 외국인 투자법에 적지 않은 변경이 있었는데, 이는 투자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변경의 필요와 유럽연합 가입 절차에 따른 표준화 작업의 일환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4년의 법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지적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관련법의 몇 가지

조항에서 투자 유치에 상당한 제한을 보였으며, 모든 투자가가 아닌 기업 주도하의 투자에만 그 제한을 두고 있었다든지 또는 외국인들의 투자 품목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 등이 불만으로 지적되었었다. 이러한 이유로 2003년 6월 17일 법률 제4,875호 ‘통합 외국인투자법(Doğrudan Yabancı Yatırımlar Kanunu; DYYK)’이 발효되어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1954년 1월 18일에 발효된 법률 제6,224호 ‘외국자본장려법(Yabancı Sermayeyi Teşvik Kanunu)’은 폐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 6월 7일 일자로 시행되어 온 제95/6990호 ‘터키장관청(Bakanlar Kurulu Kararı)결의’와 ‘외국자본의 한계 결의안(Yabancı Sermaye Çerçeve Kararı; YSÇK)’ 및 관련 공고들은 그 시행이 폐지되었다. 즉, 터키의 ‘통합 외국인투자법’(이하 ‘외국인투자법’)이 발효되면서부터 외국인자본을 가지고 터키 시장에서 거의 무제한적으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되었다.

II. 터키의 투자관련 현황

1. 터키 개요

터키는 6천 8백만 명이라는 거대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 관세 동맹을 맺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와 역사적, 민족적 유대가 강하며 구동구권에 대한 재수출 기지로서도 활용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경제성장은 두 차례 지진피해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1999년(-6.1% 성장)과 외환위기에 따른 2001년(-9.5% 성장)을 제외하고는 매년 4~5% 내외로 건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터키의 기본적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 입장은 내·외국인의 동등한 대우이다. 일부 산업은 국가독점으로 지정되어 있어 진출이 제한되나 관광, 교육, 보건, 유통 등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은 보장된다. 실제로 내국인 고용의무, 수출의무, 국산 원자재 사용의무 등의 제한이 없으며, 과실송금도 보장되며 자본금의 외화계좌 납입도 보장된다. 외국인 투자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산업공단을 적극 조성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 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장려로 국유화되어 있는 광산으로의 투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 분야가 외자에 개방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및 금지업종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 분야가 외자에 개방되어 있다. 단, 부동산 중개업, 어업은 금지하고 있다. 개인, 법인이 기업을 설립할 경우 최소 필요투자액은 5만 달러, 공동출자인 경우 출자자 수에 5만 달

리를 곱한 금액으로 된다. 단, 이 경우 출자비율은 당사자가 결정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 등 2가지 형태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나 유한회사는 은행업,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이익, 배당금 등의 해외로의 이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은 없지만, 송금은행은 그 내용을 외국인 투자국에 보고해야 한다. 외국기업 토지소유 외국인 또는 외자기업의 토지 소유에 관한 규제는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외국기업은 그 기업규모에 따라서 토지의 구입 및 소유가 인정되고 있다.

2. 투자 현황

1968-2009년 3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실적은 총 1,761억 5,910만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주로 중국(21.6%), 미국(18.2%), EU(11.3%)에 집중되어 있는데 터키의 경우는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0.3%에 불과한 4억 5,490만 달러이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경우 2008년 말 기준으로 약 1억 4,901만 달러에 이르며 주로 EU(34.3%), 미국(27.1%), 일본(14.7%)로부터 집중되고 있는데 터키로부터의 투자는 약 736만 달러로 전체 외국인 투자의 0.005%로 매우 미약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1년 금융 규제 감독청(Banking Regulatory Supervisor Agency; BRSA)과 재정부(Undersecretariat of Treasury)의 금융시스템 개혁, 운영비율 규정 개정 등으로 금융기관의 효율성과 수익성이 제고됨에 따라 외국계 금융기관의 터키 진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터키에는 HSBC, Citi Group, Fortis, ING 등 20개 이상의 외국계 은행이 진출해 있으며 한국계 금융기관의 터키 금융시장 진출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또한 터키는 2010년 10월 기준으로 17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으며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와도 추가 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어 주변시장 진출 교두보로서 터키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터키의 이러한 지정학적 이점과 대외관계를 충분히 활용하여 주변 유망시장에 진출하는 거점으로서의 활용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변 유망시장인 중앙아시아, 중동, 러시아 등에 대해 공동 진출하기 위해 양국의 상호보완성에 바탕을 두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의 기술과 자본에 터키의 노동력과 이미 이들 지역 시장에 형성된 사업 기반 등을 활용할 경우 건설부문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터키는 건설 이외에도 통신, 금융 분야에

있어 중앙아시아 지역에 이미 진출하여 상당한 사업기반을 갖추고 있다. 또한 한국의 연구개발 경험과 자본력, 그리고 터키의 전문 기술인력 등을 활용하여 공동 연구 개발과 기술개발을 통해 양국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 잠재력이 큰 개도국에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을 토대로 종합적 경제개발 컨설팅을 제공하고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5~2006년에 터키 민간부문 발전, 기술개발과 혁신, 인력개발 전략 등에 대한 개발경험 전수사업이 추진되었다. 한-터키 지식공유사업은 터키 정부가 EU 가입협상을 시작한 이후 경제·재정개혁을 통한 정부개혁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 있는 때에 맞추어 추진되었다.

우리나라의 개발경험 전수사업을 통해 터키 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정책자문을 통하여 터키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양국 간 협력관계를 증진할 수 있었으며, 터키의 민간부문 발전을 위한 정책, 기술발전과 혁신시스템 정책, 행정개혁 및 재정개혁을 위한 정책, 산업화와 인적자원개발 정책,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 등이 제안되었다.

공공부문 정책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 시행, 성과관리체계 마련,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산업정책 분야에서는 터키 정부가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국제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저금리 대출, 면세, VAT 감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정책이 지나치게 획일적인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기관의 다양한 금융지원, 금융지원제도의 경험과 수출 진흥 및 중화학공업육성 정책 등에서 나타난 지속적인 평가와 그에 따른 보상과 같은 우리의 정책경험 공유가 또한 제시될 수도 있다.

Ⅲ. 외국인투자법의 목적과 범위

본 투자법의 목적은 총체적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장려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또한 투자와 투자가의 개념적 정의에 있어서도 국제 표준에 부응, 총체적 외국 투자의 현실화에 대한 허용과 승인 체제로의 전환 등도 본 투자법의 목적들 가운데 하나로 본다 (외국인투자법/Doğrudan Yabancı Yatırımlar Kanunu; DYYK, 제1조).

다시 말하면 본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예전에 비해 한층 더 유리한 법적 권리와 가능성을 보장해 주며, 외국인 투자자와 현지인 투자자 사이의 법적

차별을 최소화시켜주고, 아울러 외국인의 투자 신청이 있을 시 불필요한 모든 행정 절차를 간소화시켜줌으로써 궁극적으로 터키에서 투자를 권장하고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DYYK 제1조).

IV. 기본개념

1. 외국인 투자자

본 법의 목적상 외국 투자자는 반드시 외국 국적을 가진 자 이어야 한다. 또한 외국법에 의해서 설립된 합법적 법인이며, 국제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범주 안에 속해야 한다(DYYK 제2조 a). 여기서 국제적 기업들에게도 투자 가능성을 부여한 부분은 새로운 외국인투자법이 신설한 것들 중 하나로 평가되면서도 국제적 기업들의 법적 권리가 명료하게 명시되지 않은 점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본 투자법은 위에서 언급된 전형적인 외국인 투자자의 정의를 보다 더 확대하여 외국 체류 중인 터키 국민들도 외국인 투자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DYYK 제2조 a/1). 또한 외국인투자법의 적용 규제 제10조에서는 외국 체류에 있어서 직장 근무 및 체류에 대한 허가를 증명할 수 있는 터키 국민이어야 함도 아울러 명시되어 있다.

2.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에 관련된 헌법 명시 내용을 보면 외국인 투자 개념에서 외국과 국내 자본 사이에 차등을 두고 있다. 또한 헌법은 외국인 투자의 모든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외국으로부터 들어와 터키 중앙은행에서 매매가 되는 전환(태환) 통화 형태의 현금 자본을 비롯해서 국채를 제외한 기업의 유동 자금, 기계와 부속 장치들, 그리고 산업 재산권과 지적 재산권 등 외국으로부터 가져온 것들을 외국인 투자로 간주한다(DYYK 제2조 b-1).

이외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터키 국내에서 발생된 새로운 투자 결과로 산출되는 이윤과 수입, 상환될 자금, 채무 가치를 지닌 투자와 그와 관련된 부수의 권리 등이 터키 국내로부터 제공되어도 역시 외국인 투자로 간주한다(DYYK 제2조 b-2).

아울러 외국인 자본은 외국과 국내로부터 조달될 수 있으며, 특히 상환될 자금도 외국인 자본으로 추가된 것은 외국인 투자의 가능성을 확대시켜 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1) 외국인 투자자 유형

외국인 투자자는 위에서 언급된 자금을 통해 터키에서 새로운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DYYK 제2조 b-i). 그 유형은 대략 다음과 같다.

- 터키에서의 회사 설립을 통해서 투자가 가능하다. 터키무역법은 터키에서 설립할 회사들의 동업자 자격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물론 처음으로 투자를 타진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도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업무 파악과 추진에 문제가 없는 터키 국민과 함께 동업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 외국 소재 회사들의 터키 내 지사 설립을 통해 가능하다(DYYK 제2조 b/i).
- 유동 자금 시장 외에 주식과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가능한 회사에 동업자가 될 수 있다(DYYK 제2조 b-ii).
- 유동 자금 시장에서 최소 10%의 주식 혹은 동일한 비율 안에서 투표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동업자가 될 수 있다(DYYK 제2조 b/ii).
- 터키에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다(DYYK 제3조 h).

2)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할 수 있는 회사

터키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설립할 수 있는 회사들은 터키무역법에서 언급되는 회사들을 비롯해서 터키 채무법에서 언급된 일반 회사들이다. 여기서 일반 회사란 콘소시움(*consortium*)이나 동업 같은 이름을 가지고 계약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터키무역법이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포함하지 않는 회사들은 외국인투자법에 의해 일반 회사로 간주된다(Uygulama Yönetmeliği 제9조).

터키 법에서는 터키무역법과 터키 채무법에서 언급되고 있는 회사 형태에 매우 주의를 요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마치 터키 국민들과 같이 모든 종류의 일반 및 무역 회사의 설립 혹은 이에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V. 터키의 외국인투자법상 기본원칙

1. 투자의 자유원칙

국제적인 이해와 국내 특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행위는 자유임이 강조되고 있다(DYYK 제3조 a/1). 이러한 기본 사항은 신헌법을 ‘외국자본장려법’과 구별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징표가 된다. 이렇게 해서 터키에 외국인 투자가 자유로워졌으며, 허가 혹은 승인 제도에서 통보제도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헌법상으로 외국인 투자에 한 가지 규제가 첨부된 것도 있었는데 그것은 국제적인 이해와 국내 특별법에 저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 국내 투자자와의 평등원칙

신헌법과 ‘외국자본장려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듯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전적으로 국내 현지인 투자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DYYK 제3조 a/2). 아울러 터키로의 투자 관심을 보이려는 외국인 예비 투자자에게도 동일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등 터키에서는 전적으로 투자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

3. 공유화와 국유화원칙

터키 법은 유입된 외국인 자본이 공유화 및 국유화 되는 것으로부터 더욱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가 현실의 필요성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지분을 상환해주는 조건으로 공유화 혹은 국유화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DYYK 제3조 b). 이와 같은 원칙은 터키헌법의 규정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터키 헌법 Anayasa 제 46-47조).

4. 자본의 이동 자유원칙

터키에서의 외국인 투자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경제활동을 통해 획득한 자본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변환 가능하며,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업무 절차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외국으로의 자금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터키에서의 경제활동을 통해 획득한 순수익, 배당, 판매, 파산, 저작, 보상, 경영과 그와 유사한

활동을 위해 지불될 금액과 외채, 원금과 이자의 지불은 터키 은행이나 민간 재정 회사들을 통해 외국으로 자유롭게 자금의 이동이 가능하다(DYYK 제3조 c).

5. 부동산 취득의 원칙

외국인투자법 제3조 d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터키에서 설립했거나 혹은 관여한 법인 회사를 통해 터키 국민들에게 소유 가능한 지역에서의 부동산에 대해 동일한 권리와 자유의 원칙을 갖는다. 여기에서 법인 회사를 통한 부동산 취득에서는 자유롭지만 외국인들이 터키에 설립한 일반 회사는 부동산의 취득이 불가능하다.

6. 분쟁에 대한 해결점 모색과 방어에 대한 원칙

민사법에 의거한 투자 협정 시 발생한 분쟁들의 해결은 당사자간 법적 소송으로 그 해결책 모색을 강구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겪게 될 계약과 관련된 행정적 문제와 분쟁도 동일한 절차로 해결되어 진다(DYYK 제3조 e).

7. 현금 외에 자본의 가치에 대한 조정원칙

현금 외에 자본 가치에 대한 조정은 ‘터키무역법’에 의거하여 행해진다(DYYK 제3조 f). 또한 외국에 설립된 회사들의 유동자금이 투자 경로를 통해 활용되어질 때는 원래 그 나라 법에 따라 가치에 대한 조정을 위해 법적 권위를 지닌 기관의 중재나 그 해당 국가의 재판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DYYK 제3조 f).

8. 외국인 직원 고용원칙

외국인투자법 제3조 g 에 의하면, 해당법의 범주 안에서 설립된 회사나 지사에 외국인 직원 고용의 원칙으로 터키 ‘근로 및 사회 보장부’에서 관할하는 관련법의 틀 안에서 외국인 직원에게 노동허가를 부여해 준다(DYYK 제3조 g/I). 이러한 범주 안에서 고용될 직원은 법률 제4817호 ‘외국인 노동 승인에 관한 법(Yabancıların Çalışma İzinleri Hakkında Kanun)’ 제14조 첫 절의 (b)에 적용되지 않는다(DYYK 제3조 g/III). 이에 따라 신청한 직장을 위해 터키에서 4주 안에 직원을 찾을 조건에서 본인의 노동 허가의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외국자본의 한계 결의안 Yabancı

Sermaye Çerçeve Kararı 제14조).

9. 연락사무소 개설원칙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들은 터키 재무부(Hazine Müsteşarlığı)의 승인으로 터키 내에서 연락사무소의 개설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연락사무소는 절대로 이윤을 발생시키는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DYYK 제3조 h). 이 연락사무소는 상업적 활동의 금지뿐만 아니라 외부에 설립된 회사와 터키에 있는 매매자와 판매자 사이를 연결하며 필요한 행정 절차와 관련 업무만(시장조사 수출품목의 재질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연락사무소의 모든 발생 재정비용(직원의 월급, 각종 세금, 운영비 등)은 터키 외의 본사에서 감당해야 한다.

1) 연락사무소의 설립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들은 터키에서 연락사무소 개설 허가 혹은 체류 연장 등을 위해서 터키 재무부에 신청해서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회사의 설립과 체류 연장에 대한 신청은 필요한 모든 서류를 완전하게 구비하여 제출한 조건에서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업무일 기준 5일 안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DYYK 적용조례 제6조 II). 이후 설립 허가를 받은 연락사무소는 해당 세무서에 신고 서류의 견본을 늦어도 한 달 안에 외국인 투자청으로 보내야 한다(DYYK 적용조례 제8조 a).

연락사무소는 최고 3년까지의 승인을 얻을 수 있으며, 기간 연장 시에는 연락사무소의 이전 활동에 따른 향후 계획안을 검토하여 다시 3년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DYYK 적용조례 제8조 c). 한편 연장의 횟수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연락사무소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

- 연락사무소의 본국 본사에 위치한 터키영사관 혹은 ‘헤이그 국제사법 회의’에서 작성되어진 ‘외국인 공식 서류’의 확인 절차 폐지 협약에 따른 활동증명서류 원본
- 본사의 기업 활동 보고서 혹은 재무제표와 수입도표
-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될 직원에 대한 본사의 직권 인증서 원본

- 연락사무소의 설립 과정을 근무하게 될 책임을 가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될 경우 위임장 원본

VI. 맺는 말

외국인 자본은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매우 커다란 유익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재정확보 자원이 되고 있다. 외국인 자본으로 국가에 새로운 기술력을 가져오게 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고용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외환의 국내 유입을 증대시켜 주며,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터키의 정치와 경제 정책의 변화는 늘 외국인 투자의 증대와 감소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 왔다. 이리하여 필요한 제반 제도의 확충과 함께 정치와 경제의 안정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1954년에 제정된 법률 제6,224호의 ‘외국자본장려법(Yabancı Sermaye Teşvik Kanunu, YSTK)’은 시대가 허락하는 환경 안에서 꽤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창출하였고, 외국인 자본 건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 처음으로 승인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투자 환경의 증대와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2003년 6월 17일에 제4,875호의 ‘통합 외국인투자법(Doğrudan Yabancı Yatırımlar Kanunu, DYYK)’이 발효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투자법으로 터키에서의 외국인 투자가 매우 자유롭게 행해짐을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다. 이전의 법은 터키에서 있을 외국인 투자는 외국인 투자청의 승인에 의거하여야 했지만, 새로운 투자법은 승인제를 폐기하고 통보제로 변화시켜 주었다. 이로써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제한 조치가 상당히 완화되었다. 그러나 한편 터키의 현지 중소 산업의 경쟁력은 새로운 외국인 자본에 비해 현저하게 약화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아직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새로운 투자법과 관련된 업무 행정으로 국제 표준에 맞는 투자와 투자자의 유입, 외국인 투자자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 자금의 자유이동, 외국인 투자에 있어서 외국인 직원의 고용, 외국인 투자 관련 분쟁과 해결 모색, 연락사무소의 활동 등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된 것은 향후 터키를 향한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고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